

제5기 배곧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

제3회 (긴급)임시회 회의록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15:00~16:00
- 장소: 본교 1층 학운위실

교장

위원장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안건심의 6. 폐회

- 심의 안건 (총 2건)

심의번호	심의 안건	담당자
1	긴급안) 9월 4일 교육과정(학년 및 학급통합)운영 계획 심의(안)	박OO
2	기타안) 2학기(유.초)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대한 심의(안)	유OO

<p>개회선포 및 국민의례</p>	<p>▶간사: 안녕하세요. 제5기 3회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교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p>	
<p>학교장 인사</p>	<p>▶학교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 잔디 보식을 2차로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보식작업이 잘 되어 9월에 추석한마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분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교육계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서 갑자기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p>	
<p>안건명</p>	<p>발언요지,결정사항</p>	<p>심의결과</p>
<p><안건1> 9월 4일 교육과정(학년 및 학급 통합)운영 계획 심의(안) <발의 박O식></p>	<p>▶위원장: 그럼 제5기 2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긴급안건과 기타안건 한건이 추가 되어 위원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분들께 동의를 얻은 후 회의 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첫 번째 긴급안건인 9월 4일 교육과정(학년 및 학급 통합)운영 계획 심의(안)을 박OO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박OO: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심의(안)제안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일 수업지도 교사 결원이 예상되는바 학생의 안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년 및 학급 통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뒷장을 보시면 2번 방법 가에 수업지도는 학년 및 학급통합으로 운영한다.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당일 두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가그룹은 1.2학년 나그룹은 3.4학년으로 나누고 당일 일정은 블록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1.2교시 3.4교시 묶는다는 뜻이고 점심시간을 좀 줄여서 운영합니다. 학생 안전 및 보호는 교사, 행정실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운영에 대한 설명은 1.2학년 시간표와 3.4학년 시간표 5.6학년 시간표가 있는데 1.2학년의 경우 3교시 후 급식을 먹고 하교는 12시 20분으로 조금 당겨지고요. 3.4학년도 5교시 수업인데 평상시보다 조금 당겨져서 하교를 하게 됩니다. 5.6학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각학년 교과 및 창의교육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하교후 학생 관련 시간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초등돌봄 및 방과후교실 운영은 정상대로 운영합니다. 제시간에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위의 해당학생은 하교후 바로 해당 교실로 입실하면 되고 당일 하교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학생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교가 빨라짐에 따라 학원시간이 텅이 생길 수 도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도서관에서 있다가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OO: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당 안건에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운영하신다는거는 2학기 다한다는건가요? ▶박OO: 아닙니다. 9월4일 당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위원: 배경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신규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 교사들의 교권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9월 4일 멈춤의 날을 한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협조를 해주시는 교사와 행정실 교육공무직분들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로 하였고 단축수업은 아니고 시간을 좀 당겨서 운영한다고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무학년운영이 가능해서 강당에서 특별한 교과 창체 연계된 교육도 있고요 너무 염려 마시고 최대한 아이들 안전에 유의해서 급식도 잘 먹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장은 9월 1일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 있으실까요? ▶위원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p>	<p>원안가결</p>

<p><안건2> 2학기(유.초)현장체 험학습 취소에 대한 심의(안) <발의 유OO></p>	<p>▶위원장: 다음 기타안건으로 2학기(유.초)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대한 심의(안)을 유OO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p> <p>▶유OO: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 유OO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것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법제처에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학교 체험학습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자 합니다.</p> <p>▶유OO: 이상입니다.</p> <p>▶위원장: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실까요? ▶학부모위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신고대상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OO: 유치원 어린이 차량처럼 노란색으로 도색하여야하고 안전 벨트도 어린이 전용으로 규정에 맞게 교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사용하는 전세버스는 일반차량이라 운영을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교원위원: 사고라는데 어쩌다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법제처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 체험학습 버스도 어린이 통학차량과 같으니 황색버스와 규정에 맞는 차량으로 타야한다는 해석이 나와 현장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재의뢰를 했지만 법제처에서 번복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차량회사에서도 가끔 있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갑자기 규정에 맞는 차량으로 개조하기에는 영세업자가 많으므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 차량회사에서 취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상의 한 끝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학습 갔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도 있으므로 취소를 해야하는게 지금 상황으로 맞지 않을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다른 대체 수단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위원: 취소 안하고 그냥 신고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원위원: 신고도 해야하고 규정에 맞게 안전벨트등도 다 교체해야하기에 바로 운행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더 질문이 있을까요? ▶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2학기(유.초)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3타></p> <p>▶위원장: 제5기 3회 학교운영위원회 긴급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3타></p>	
<p>참석인원 학운위 위원 11명</p>	<p>- 학부모위원: 송OO, 이OO, 이OO, 김OO - 교원위원: 정OO, 이OO, 이OO, 박OO, 김OO - 지역위원: 김OO, 유OO - 간사: 김OO</p> <p>*구성인원: 학부모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5명 총12명 (학생위원 2명, 간사 1명)</p>	